「변호사법」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24<1949>년 법률 제205호
- **공 포 일**: 1949년 6월 10일
- **개 정 일**: 2018년 5월 30일

원문	번역문
第一章 弁護士の使命及び職務	**제1장 변호사의 사명 및 직무**
第一条（弁護士の使命） 弁護士は、基本的人権を擁護し、社会正義を実現することを使命とする。 ２ 弁護士は、前項の使命に基き、誠実にその職務を行い、社会秩序の維持及び法律制度の改善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제1항의 사명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二条（弁護士の職責の根本基準） 弁護士は、常に、深い教養の保持と高い品性の陶やゝに努め、法令及び法律事務に精通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2조**(변호사 직무의 근본기준) 변호사는 언제나 높은 교양의 유지와 고매한 품성의 도야를 위하여 노력하고 법령 및 법률사무에 능통하여야 한다.

第三条（弁護士の職務） 弁護士は、当事者その他関係人の依頼又は官公署の委嘱によつて、訴訟事件、非訟事件及び審査請求、再調査の請求、再審査請求等行政庁に対する不服申立事件に関する行為その他一般の法律事務を行うことを職務とする。 ２　弁護士は、当然、弁理士及び税理士の事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3조**(변호사의 직무) ① 변호사는 당사자, 그 밖에 관계인의 의뢰 또는 관공서의 위촉에 따라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심사청구, 재조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한 행위, 그 밖에 일반 법률 사무의 수행을 직무로 한다. ② 변호사는 변리사 및 세무사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第二章　弁護士の資格	**제2장　변호사의 자격**
第四条（弁護士の資格） 司法修習生の修習を終えた者は、弁護士となる資格を有する。	**제4조**(변호사의 자격)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마친 자는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第五条（法務大臣の認定を受けた者についての弁護士の資格の特例） 法務大臣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その後に弁護士業務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法人が実施する研修であつて法務大臣が指定するものの課程を修了したと認定した者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弁護士となる資格を有する。 一　司法修習生となる資格を得た後に簡易裁判所判事、検察官、裁判所調査官、裁判所事務	**제5조**(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자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후 변호사 업무에 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실시하는 연수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한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1. 사법연수생이 될 자격을 얻은 후에 간이재판소 판사, 검찰관, 재판소 조사관, 재판소

官、法務事務官、司法研修所、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若しくは法務省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九十三号）第四条第一項第三十五号若しくは第三十七号の事務をつかさどる機関で政令で定めるものの教官、衆議院若しくは参議院の議員若しくは法制局参事、内閣法制局参事官又は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十六号）による大学で法律学を研究する大学院の置かれているものの法律学を研究する学部、専攻科若しくは大学院における法律学の教授若しくは准教授の職に在つた期間が通算して五年以上になること。	사무관, 법무사무관, 사법연수원, 재판소직원종합연수원 또는 「법무성설치법」(평성11<1999>년 법률 제93호) 제4조제1항제35호 또는 제37호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교관, 중의원이나 참의원 의원 또는 법제국참사, 내각법제국참사관 또는 「학교교육법」(소화22<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법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을 연구하는 학부, 전공과 또는 대학원의 법학 교수 또는 준교수의 직무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 될 것
二　司法修習生となる資格を得た後に自らの法律に関する専門的知識に基づいて次に掲げる事務のいずれかを処理する職務に従事した期間が通算して七年以上になること。	2. 사법연수생이 될 자격을 얻은 후에 스스로의 법률에 관한 전문적 지식으로 다음의 사무 중 어느 하나를 처리하는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7년 이상이 될 것
イ　企業その他の事業者（国及び地方公共団体を除く。）の役員、代理人又は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として行う当該事業者の事業に係る事務であつて、次に掲げるもの（第七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ないで行われるも	가. 기업, 다른 사업자(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제외한다)의 임원,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로서 수행하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제72조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のに限る。） （１） 契約書案その他の事業活動において当該事業者の権利義務についての法的な検討の結果に基づいて作成することを要する書面の作成 （２） 裁判手続等（裁判手続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これに類する手続をいう。以下同じ。）のための事実関係の確認又は証拠の収集 （３） 裁判手続等において提出する訴状、申立書、答弁書、準備書面その他の当該事業者の主張を記載した書面の案の作成 （４） 裁判手続等の期日における主張若しくは意見の陳述又は尋問 （５） 民事上の紛争の解決のための和解の交渉又はそのために必要な事実関係の確認若しくは証拠の収集	것으로 한정한다) (1) 계약서안, 그 밖의 사업활동에서 해당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의 결과에 따라 작성할 것을 필요로 하는 서면의 작성 (2) 재판절차 등(재판절차 및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증거의 수집 (3) 재판절차 등에서 제출하는 소장,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의 해당 사업자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안의 작성 (4) 재판절차 등의 기일에 하는 주장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심문 (5) 민사상 분쟁의 해결을 위한 화해 교섭 또는 그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증거의 수집
ロ 公務員として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事務であつて、次に掲げるもの （１） 法令（条例を含む。）の立案、条約その	나.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의 입안, 조약, 그 밖

他の国際約束の締結に関する事務又は条例の制定若しくは改廃に関する議案の審査若しくは審議 （２） イ（２）から（５）までに掲げる事務 （３） 法務省令で定める審判その他の裁判に類する手続における審理又は審決、決定その他の判断に係る事務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者が行うもの	의 국제약속의 체결에 관한 사무 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관한 의안의 심사 또는 심의 (2) 가[1]의(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무 (3)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심판, 그 밖의 재판과 유사한 절차의 심리 또는 심결, 결정, 그 밖의 판단과 관련된 사무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행하는 것
三 検察庁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一号）第十八条第三項に規定する考試を経た後に検察官（副検事を除く。）の職に在つた期間が通算して五年以上になること。	3. 「검찰청법」(소화 22<1947>년 법률 제61호) 제18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거친 후에 검찰관(부검사를 제외한다)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 될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期間（これらの期間のうち、第一号に規定する職に在つた期間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職務に従事した期間については司法修習生となる資格を得た後のものに限り、前号に規定する職に在つた期間については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의 가 또는 나의 기간(이들 기간 중 제1호에 따른 직책에 있었던 기간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생이 될 자격을 얻은 자로 한정하며, 제3호에 따른 직책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1] 일본의 법조문은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것의 명칭은 없다. 따라서 '○호의 가'로 표시하기로 한다.

察庁法第十八条第三項に規定する考試を経た後のものに限る。）が、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年数以上になること。 イ　第一号及び前号に規定する職に在つた期間を通算した期間　五年 ロ　第二号に規定する職務に従事した期間に第一号及び前号に規定する職に在つた期間を通算した期間　七年	는 「검찰청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거친 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연수 이상이 될 것 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책에 있었던 기간을 통산한 기간: 5년 나. 제2호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책에 있었던 기간을 통산한 기간: 7년
第五条の二（認定の申請） 前条の規定により弁護士となる資格を得ようとする者は、氏名、司法修習生となる資格を取得し、又は検察庁法第十八条第三項の考試を経た年月日、前条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の職に在つた期間又は同条第二号の職務に従事した期間及び同号の職務の内容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認定申請書を法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認定申請書には、司法修習生となる資格を取得し、又は検察庁法第十八条第三項の考試を経たことを証する書類、前条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の職に在つた期間又は同条第二号の職務に従事した期間及び同号の職務の内容を証する書類その他の	**제5조의2**(인정의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변호사가 될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성명, 사법연수생이 될 자격을 취득하거나 「검찰청법」 제18조제3항의 고시를 거친 연월일,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 및 그 직무의 내용,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정신청서를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에는 사법연수생이 될 자격을 취득하거나 「검찰청법」 제18조제3항의 고시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 및 그 직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法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する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五条の三（認定の手続等） 法務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た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申請者」という。）が第五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申請者に対し、その受けるべき同条の研修（以下この条において単に「研修」という。）を定めて書面で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조의3(인정의 절차 등) ① 법무대신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가 받아야 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연수”라 한다)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研修を実施する法人は、申請者がその研修の課程を終えたときは、遅滞なく、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申請者の研修の履修の状況（当該研修の課程を修了したと法務大臣が認めてよいかどうかの意見を含む。）を書面で法務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に基づき、申請者が研修の課程を修了したと認めるときは、当該申請者について第五条の認定（以下この章において単に「認定」とい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연수를 실시하는 법인은 신청자가 그 연수 과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연수 이수 상황(해당 연수 과정의 수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무대신의 의견을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법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대신은 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신청자가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인정(이하 이 장에서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4　法務大臣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につき認定又は却下の処分をするときは、申請者に対し、書面により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に係る処分（申請者が第五条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を理由とする却下の処分を除く。）又はその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八号）第二章第四節の規定は、適用しない。	④ 법무대신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정 또는 각하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처분(신청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각하 처분을 제외한다)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평성26<2014>년 법률 제68호) 제2장제4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五条の四（研修の指定） 法務大臣は、研修の内容が、弁護士業務を行うのに必要な能力の習得に適切かつ十分なもの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第五条の規定による研修の指定をしてはならない。 2　研修を実施する法人は、前項の研修の指定に関して法務大臣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3　法務大臣は、第五条の研修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研修を実施する法人に対し、当該研修に関して、必要な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必要な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제5조의4**(연수의 지정) ① 법무대신은 연수의 내용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에 적절하며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만 제5조에 따른 연수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를 실시하는 법인은 제1항의 연수의 지정에 관하여 법무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법무대신은 제5조의 연수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연수를 실시하는 법인에게 해당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五条の五（資料の要求等） 法務大臣は、認定に関する事務の処理に関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申請者に対し必要な資料の提出を求め、又は公務所、公私の団体その他の関係者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5조의5**(자료의 요구 등) 법무대신은 인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공·사 단체, 그 밖의 관계자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第五条の六（法務省令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認定の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제5조의6**(법무성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第六条（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職に在つた者についての弁護士の資格の特例）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の職に在つた者は、第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弁護士となる資格を有する。	**제6조**(최고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자에 대한 변호사 자격의 특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직책에 있었던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第七条（弁護士の欠格事由） 次に掲げる者は、第四条、第五条及び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弁護士となる資格を有しない。 一 禁錮こ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 二 弾劾裁判所の罷免の裁判を受けた者 三 懲戒の処分により、弁護士若しくは外国法事務弁護士であつて除名され、弁理士であつ	**제7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탄핵재판소의 파면 재판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에 따라 변호사 또는 외국법사무변호사에서 제명, 변리사 업무 금지, 공인회

て業務を禁止され、公認会計士であつて登録を抹消され、税理士であつて業務を禁止され、又は公務員であつて免職され、その処分を受け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ない者	계사 등록 말소, 세무사 업무 금지 또는 공무원 면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四 成年被後見人又は被保佐人	4.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五 破産者であつて復権を得ない者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第三章 弁護士名簿	**제3장 변호사명부**
第八条（弁護士の登録） 弁護士となるには、日本弁護士連合会に備えた弁護士名簿に登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8조**(변호사 등록) 변호사가 되려면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비치된 변호사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第九条（登録の請求） 弁護士となるには、入会しようとする弁護士会を経て、日本弁護士連合会に登録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조**(등록청구) 변호사가 되려면 가입하려는 변호사회를 거쳐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등록청구를 하여야 한다.
第十条（登録換の請求） 弁護士は、所属弁護士会を変更するには、新たに入会しようとする弁護士会を経て、日本弁護士連合会に登録換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弁護士は、登録換の請求をする場合には、所属弁護士会にその旨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조**(등록변경청구) ① 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변호사회를 거쳐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등록변경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등록변경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第十一条（登録取消の請求） 弁護士がその業務をやめようとするときは、所属弁護士会を経て、日本弁護士連合会に登録取消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1조**(등록취소청구) 변호사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소속변호사회를 거쳐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등록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第十二条（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の拒絶） 弁護士会は、弁護士会の秩序若しくは信用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又は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弁護士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その適正を欠くおそれがある者について、資格審査会の議決に基づき、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を拒絶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心身に故障があるとき。 二 第七条第三号に当たる者が、除名、業務禁止、登録の抹消又は免職の処分を受け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て請求したとき。 2 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前一年以内に当該弁護士会の地域内において常時勤務を要する公務員であつた者で、その地域内において弁護士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特にその適正を欠くおそれがあるものについてもまた前項と同様とする。	**제12조**(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 전달의 거부) ① 변호사회는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의 전달을 거부할 수 있다. 1. 심신에 장애가 있을 때 2.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명, 업무 금지, 등록 말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한 때 ② 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 전 1년 이내에 해당 변호사회의 지역 내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그 지역 내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히 적절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다.

3　弁護士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請求の進達を拒絶する場合には、登録又は登録換えを請求した者に、速やかに、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弁護士会が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を求められた後三箇月を経てもなお日本弁護士連合会にその進達をしないときは、その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をした者は、その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を拒絶されたものとみなし、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 변호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의 전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청구한 자에게 신속하게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회가 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의 전달을 요구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를 한 자는 그 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의 전달이 거부된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第十二条の二 日本弁護士連合会は、前条の規定による登録又は登録換えの進達の拒絶についての審査請求（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審査請求を含む。）に対して裁決をする場合には、資格審査会の議決に基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日本弁護士連合会は、前項の審査請求に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弁護士会に対し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審査請求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第九条、第十七条、第二章第三節及び第五十条第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제12조의2 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변경 전달의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②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회에게 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의 전달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 제9조, 제17조, 제2장제3절 및 제50조 제2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第一項の審査請求に関する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第十一条第二項中「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名された者（以下「審理員」という。）」とあるのは「日本弁護士連合会の資格審査会」と、同法第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中「審理員」とあるのは「第十一条第二項の資格審査会」と、同法第四十四条中「行政不服審査会等から諮問に対する答申を受けたとき（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諮問を要しない場合（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場合を除く。）にあっては審理員意見書が提出されたとき、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規定する議を経たとき）」とあるのは「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十二条の二第一項の議決があったとき」とする。	④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자(이하 “심리원”이라 한다)”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자격심사회”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리원”은 “제11조제2항의 자격심사회”로, 같은 법 제44조 중 “행정불복심사회 등이 자문에 대한 답변을 한 때[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문이 필요없는 경우(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심리원 의견서가 제출된 때,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결을 거친 때]”는 “「변호사법」(소화24<1949>년 법률 제205호) 제12조의2제1항의 의결이 있는 때”로 한다.
第十三条（弁護士会による登録取消しの請求） 弁護士会は、弁護士が第十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及び第二項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虚偽の申告をしていたとき、又は心身の故障により弁護士の職務を行わせることがその適正を欠くおそれがあるときは、資格審査会の議決に基き、日本弁護士連合	**제13조**(변호사회에 의한 등록취소의 청구) ① 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때 또는 심신의 장애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본

会に登録取消し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弁護士会は、前項の請求をした場合には、その弁護士に、速やかに、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변호사연합회에 등록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회는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변호사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十四条 前条の規定により登録取消しの請求をされた者は、その通知を受け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箇月以内に日本弁護士連合会に異議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２　日本弁護士連合会は、前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は、資格審査会の議決に基き、その申出に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弁護士会に登録取消の請求を差し戻し、その申出に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日本弁護士連合会は、前項の処分をした場合には、異議の申出をした者に、速やかに、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4조** ① 제13조에 따라 등록취소가 청구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내에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회에 등록취소청구를 반려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제2항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十五条（登録及び登録換の拒絶） 日本弁護士連合会は、弁護士会から登録及び登録換の請求の進達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第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に掲げる事由があつて登録又は登録換を	**제15조**(등록 및 등록변경의 거부) 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회가 등록 및 등록변경청구를 전달한 경우에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

拒絶すること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資格審査会の議決に基き、その登録又は登録換を拒絶することができる。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2 日本弁護士連合会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又は登録換えを拒絶する場合には、登録又は登録換えを請求した者及びこれを進達した弁護士会に、速やかに、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청구한 자 및 이를 전달한 변호사회에 신속하게 그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十六条（訴えの提起）	**제16조**(소의 제기)
第十二条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く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の拒絶についての審査請求を却下され若しくは棄却され、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出を棄却され、又は前条の規定により登録若しくは登録換えを拒絶された者は、東京高等裁判所にその取消し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① 제12조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변경청구의 전달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제15조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변경이 거부된 자는 도쿄 고등재판소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日本弁護士連合会が第十二条の規定による登録若しく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の拒絶についての審査請求若しくは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出を受けた後三箇月を経てもなお裁決若しくは第十四条第二項の処分をせず、又は登録若しく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を受けた後三箇月を経てもなお弁護士名簿に登録若しくは登録換えをし	②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12조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변경청구의 전달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나 제14조제2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등록변경청구의 전달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 변호사 명부에 등록이나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청구나 이의신

ないときは、審査請求若しくは異議の申出をし、又は登録若しくは登録換えの請求をした者は、その審査請求若しくは異議の申出を棄却され、又は登録若しくは登録換えを拒絶されたものとみなし、前項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청 또는 등록이나 등록변경청구를 한 자는 그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기각 또는 등록이나 등록변경이 거부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登録又は登録換えの請求の進達の拒絶に関しては、これについての日本弁護士連合会の裁決に対してのみ、取消し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③ 등록 또는 등록변경청구의 전달 거부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十七条（登録取消しの事由） 日本弁護士連合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弁護士名簿の登録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제17조**(등록취소의 사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변호사 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一 弁護士が第七条第一号又は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1. 변호사가 제7조제1항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二 弁護士が第十一条の規定により登録取消しの請求をしたとき。	2. 변호사가 제11조에 따라 등록취소청구를 한 때
三 弁護士について退会命令、除名又は第十三条の規定による登録取消しが確定したとき。	3. 변호사에 대하여 탈퇴명령, 제명 또는 제13조에 따른 등록취소가 확정된 때
四 弁護士が死亡したとき。	4. 변호사가 사망한 때
第十八条（登録取消の事由の報告） 弁護士会は、所属の弁護士に弁護士名簿の登録取消の事由があ	**제18조**(등록취소사유의 보고)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변호사 명부의 등록취소사유가 있

ると認めるときは、日本弁護士連合会に、すみやかに、その旨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하게 일본변호사연합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第十九条（登録等の通知及び公告） 弁護士名簿の登録、登録換及び登録取消は、すみやかに、日本弁護士連合会から当該弁護士の所属弁護士会に通知し、且つ、官報をもつ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9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고) 변호사 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및 등록 취소는 신속하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해당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회에 통지하며 보고로서 공고하여야 한다.